

시 민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925
결재일자	2020.4.17.
공개여부	비공개(5.6)
방침번호	

조사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
협조	시민감사팀장 조사관	

『은평구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관련』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

2020. 4.



# 목 차

I.	감사청구 개요	1
II.	감사실시 개요	2
III.	감사대상 관련 현황	3
IV.	감사결과 총평	4
V.	감사결과 세부사항	7
1.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의 걱정 여부	7
2.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의 걱정 여부	15
VI.	조치할 사항	20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2

# 『은평구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관련』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

## I 감사청구 개요

청구인 대표: ○○○(유효 청구인 209명)

○ 주소: 서울시 은평구 ◆◆로 ◆◆길

감사청구 경과

- 2019. 8. 20. : 주민감사청구서 접수
- 2019. 11. 29. : 청구인 명부 제출(청구인→위원회)
- 2020. 2. 13. : 감사청구심의회 심의·의결(수리)
- 2020. 2. 21. : 감사계획 실시 의결

감사청구 취지

2017년 7월 이후부터 2019년 8월까지 은평구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람.

감사청구 사항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해 제공 받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 은평구는 정보공개제도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있어 은평구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음.

- 은평구는 이의신청 처리대장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등의 자료를 보면 은평구청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심의해야 할 이의신청 중 다수를 심의 없이 자의적으로 비공개 처리하였고 이는 은평구청의 권한남용임.
- 이는 정보공개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은평구의 정보공개법 위반은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건대, 은평구의 법률위반은 단속착오가 아니며 은평구 전체의 위법행위임
  - 이와같이 은평구청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원인은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평구 전체 부서와 관련된 만큼 담당공무원 단독의 위법행위,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은평구청 전체의 위법행위라는 판단임.
  - 따라서 법률위반의 원인에 있어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은평구청 전체를 통제하는 지침이 있는 지 여부와 고위 공무원의 지시여부를 조사 요구함.

## II 감사실시 개요

대상 기관: 은평구

감사 기간: 2020. 2. 13.(목) ~ 4. 16.(목)

○ 실지 감사: 2020. 3. 26. (목)

감사 범위

○ 주민감사 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은평구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에

## 대한 제반 업무

### 중점 감사 사항

-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의 적정 여부
-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의 적정 여부

### 감사반 편성: 총 5명

- 감사 반장: 안영 시민감사옴부즈만
- 감사 반원: 시민감사팀 박은경 팀장, 박정곤 조사관, 남문봉 조사관, 참여옴부즈만

## III 감사대상 관련 현황

### 청구관련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

-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현황(2017. 7. ~ 2019. 8.)

총계(접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143건	18건	125건

- 동 기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횟수: 9회
  - ▶ 상정 안건: 18건
  - ▶ 회의 개최 방식: 대면 8회, 서면 1회
  - ▶ 회의 결과: 부분인용 5건, 인용 2건, 기각 11건
-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이의신청 처리 내역: 125건
  - ▶ 처리결과: 인용 52건, 부분인용 28건, 기각 41건, 각하 4건

## 1.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의 적정 여부

### ○ 법령 상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의 예외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 2항 2호에 의하면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 ② 2회 이상 반복된 이의신청
- ③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 ④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⑤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 ○ 은평구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부적정

- 감사대상기간인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기간(이하 감사대상기간이라 함) 중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대상 이의신청 건 143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이 중 18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심의회가 개최가 되었고 미개최 125건 중 법령 상 미개최 사유에 해당되는 건은 48건이다.
- 나머지 77건은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공개여부를 심의하였어야 하나 심의없이 처리부서의 임의판단에 의해 비공개/부분공개 처리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
- 기간 중 정보공개 이의신청 143건의 처리부서는 34개이며 이 중 24개 부서에서 77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

## 2.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의 적정 여부

### ○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의 고의성 여부

- 담당자들에 대한 면담과 관련서류를 확인한 결과 은평구에서 감사대상 기간 동안 이의신청의 전반적인 처리 현황에 있어 고의적으로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 이의신청에 대한 기간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 이의신청이 3배가 증가하면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비율은 2017년 13%, 2018년 30%에서 2019년 3%로 급격히 하락한 반면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인용률은 2017년 38%, 2018년 54%, 2019년 67%로 매년 10% 이상씩 상승하고 있고, 법령상 정보공개심의회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절한 미개최의 비율도 2017년 85%에서 2018년 72%, 2019년 56%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부적절한 처리의 비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부적절한 처리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그리고, 처리부서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도 이의신청 처리부서인 34개 부서 중 24개 부서에서 법령상 정보공개심의회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절한 미개최가 발생하여 특정 부서의 고의적인 부적절한 처리라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청구인별 처리현황의 경우에도 감사대상기간 중 10건 이상을 청구한 청구인 2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에 있어 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한 부적절한 미개최의 비율이 56%와 54%로 전체 기간 평균인 62%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특정 청구인에 대해 고의적으로 이의신청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절차의 개선 필요

- 정보공개 이의신청 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은평구의 이의신청 청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개최율이 3%로 급격히 낮아진 2019년 이전인 2017년, 2018년에도 개최율은 각각 13%, 30%로 낮은 편인데 이러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처리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담당부서인 민원여권과가 아닌 각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여부(안전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작 담당부서인 민원여권과에서는 이러한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이로 인하여 처리부서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예외사항과 관련한 법령이나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 판단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없다.
-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처리부서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심의회 담당부서인 민원여권과에서도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 1.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의 적정 여부

### [청구사항]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해 제공 받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 은평구청은 정보공개제도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있어 은평구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었음.
  - 은평구청의 이의신청 처리대장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등의 자료를 보면 은평구청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심의해야 할 이의신청 중 다수를 심의 없이 자의적으로 비공개 처리하였고 이는 은평구청의 권한남용임.
  - 이는 정보공개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심의회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②** 정보공개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의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민원여권과장으로 하고, 4명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때에는 여성의 비율이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정보공개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기능)** 정보공개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안건상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안건상정요청서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례 제14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나. 정보(부분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통지서 사본

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사본

라. 부서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

마. 그 밖에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 □ 확인 사실

### ○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이의신청

-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 단순·반복적인 청구

▶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 ○ 감사대상기간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

2017년 7월 ~ 2019년 8월	이의신청 청구	심의회 개최	심의회 미개최
	143건	18건	125건

## ○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사유 분류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하지 않은 125건에 대하여 은평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미개최 사유를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48건이며 77건은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개최 사유	피청구인 주장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① 심의를 거친 사항	4건	1건	3건
② 반복된 이의신청	9건	-	9건
③ 법령 상 비밀로 규정	14건	-	14건
④ 기간 경과 이의신청	1건	1건	-
⑤ 요구대로 공개	63건	46건	17건
⑥ 기타	34건	-	34건
합계	125건	48건	77건

- ①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총 4건 중 적정 1건/부적정 3건)은 해당 이의신청 건이 ‘심의회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나 은평구에서 제출한 관련 문서를 확인한 결과 4건 중 1건만이 이전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친 사항이었고 3건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친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 ② 단순 반복적인 이의신청 (총 9건 중 적정 0건/부적정 9건)의 경우 은평구는 9건에 대하여 반복된 이의신청이 아닌 반복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기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2번이상의 반복적인 이의신청 청구인 경우에만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예외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와의 질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정안전부 질의 답변(접수번호 2AA-2003-0584613)

- ▶ 『정보공개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단순·반복적인 청구'를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시행령』제 11조 제2항의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의회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2011.10.17. 시행된 『정보공개법 시행령』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예외의 단서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이후 2013.11.7. 법 제18조 제2항이 신설된 것을 볼 때 법 제18조 제2항의 '반복적인 청구'는 '반복적인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③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의 청구 (총14건 중 적정 0건/부적정 14건)의 경우 은평구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예외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의 제5호, 제6호, 제7호를 적용하였으나 규정 상의 '법령'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타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인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에 해석이 되어 있으며, 법률 자문을 통해서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 ④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총 1건 중 적정 1건/부적정 0건)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이의신청은 각하할 수 있도록 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며,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결정 통지일인 2018. 10. 9.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2018. 12. 12.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각하되었다.
- ⑤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총 63건 중 적정 46건/부적정 17건) 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의 요구대로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며 17건의 경우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부분공개로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⑥ 기타 미개최 사유 (총 34건 중 적정 0건/부적정 34건) 중 5건은 이의신청 처리 담당자의 업무절차 및 관련법령의 미숙지로 인해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위한 안전상정을 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29건은 미개최 사유 ③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6호, 제18조 제2항 제3호 등을 근거로 하여 이의신청 처리부서 자체 판단에 의해 부분인용, 인용, 기각처리를 하면서 정보공개심의회에 안전상정을 하지 않았다.

○ 처리부서별 이의신청 청구 및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연번	처리부서	이의신청 청구	심의회 개최	심의회 미개최	심의회 미개최		부적정 비율
					적정	부적정	
1	자원순환과	24건	6건	18건	4건	14건	78%
2	도시계획과	15건	-	15건	6건	9건	60%
3	사회적경제과	9건	-	9건	-	9건	100%
4	행정지원과	8건	-	8건	4건	4건	50%
5	공원녹지과	6건	-	6건	5건	1건	17%
6	문화관광과	6건	4건	2건	2건	-	-
7	주차관리과	6건	1건	5건	1건	4건	80%
8	보육지원과	5건	-	5건	-	5건	100%
9	생활복지과	5건	3건	2건	2건	-	-
10	의회사무국	5건	1건	4건	4건	-	-
11	자치안전과	5건	-	5건	2건	3건	60%
12	감사담당관	4건	1건	3건	1건	2건	67%
13	시민교육과	4건	-	4건	1건	3건	75%
14	주거재생과	4건	1건	3건	-	3건	100%
15	건축과	3건	-	3건	-	3건	100%
16	도시경관과	3건	-	3건	3건	-	-

17	일자리경제과	3건	-	3건	1건	2건	67%
18	재무과	3건	-	3건	2건	1건	33%
19	홍보담당관	3건	-	3건	3건	-	-
20	가족정책과	2건	1건	1건	1건	-	-
21	기획예산과	2건	-	2건	-	2건	100%
22	도로과	2건	-	2건	-	2건	100%
23	생활체육과	2건	-	2건	1건	1건	50%
24	전산정보과	2건	-	2건	-	2건	100%
25	협치담당관	2건	-	2건	1건	1건	50%
26	환경과	2건	-	2건	-	2건	100%
27	교통행정과	1건	-	1건	1건	-	-
28	불광2동	1건	-	1건	1건	-	-
29	세무1과	1건	-	1건	-	1건	100%
30	세무2과	1건	-	1건	1건	-	-
31	어르신복지과	1건	-	1건	-	1건	100%
32	응암2동	1건	-	1건	1건	-	-
33	지적과	1건	-	1건	-	1건	100%
34	치수과	1건	-	1건	-	1건	100%
합계		143건	18건	125건	48건	77건	62%

-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건과 관련된 은평구 처리부서는 총 34개 부서로서, 은평구 전체 부서 55개 (동 16개 포함)의 62%에 해당한다.
- 이 중 정보공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나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인 48건을 처리한 부서는 10개부서이며, 나머지 24개 부서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처리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 검토 결과

- 다수의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없이 부적절한 처리
  - 정보공개 이의신청이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과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평구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125건 중 77건 (62%)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없이 처리부서의 임의 판단에 의하여 기각/각하/부분인용 처리하였으며,
  - 감사대상기간 중 이의신청 처리부서인 34개 부서의 70%인 24개 부서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부적절하게 미개최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

## 2.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의 적정 여부

### [청구사항]

- 또한, 은평구의 정보공개법 위반은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건대, 은평구의 법률위반은 단속착오가 아님.
  - 이와같이 은평구청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원인은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평구 전체 부서와 관련된 만큼 담당공무원 단독의 위법행위,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은평구청 전체의 위법행위라는 판단임.
  - 따라서 법률위반의 원인에 있어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은평구청 전체를 통제하는 지침이 있는 지 여부와 고위 공무원의 지시여부를 조사 요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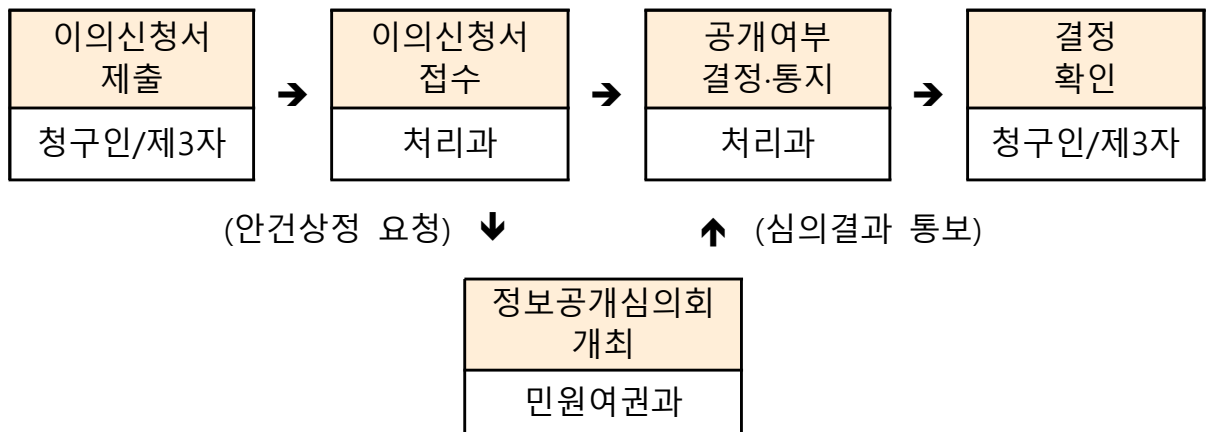
## □ 확인사실

### ○ 은평구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절차

- ① 정보공개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제3자)이 처리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 ② 이의신청처를 접수한 처리부서에서는 접수된 이의신청 안건을 자체 판단에 의해 인용, 부분 인용, 기각, 각하 등을 결정하거나,
- ③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상정요건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신청안건을 정보공개심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민원여권과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토록 요청한다.

[은평구의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은평구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청구 및 처리 현황

구분	2017년 7월~12월	2018년	2019년 1월~8월	합계
이의신청	8건	46건	89건	143건
처리	(부분)인용	3건	25건	60건
	기각	4건	19건	28건
	각하	1건	2건	1건
심의회 개최	1건	14건	3건	18건
(부분)인용률	38%	54%	67%	60%
심의회 개최비율	13%	30%	3%	13%

- 2017년 1월~7월에 8건에서 2018년 46건, 그리고 2019년 1월~8월 89건으로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287%, 290% 증가하여 매년 3배 가량 증가하고 있다.

-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청구 건수 대비 (부분)인용률은 2017년 38%에서 2018년 54%, 2019년 67%로 매년 10%가량 상승 하고 있다.
- 그러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비율은 2017년 13%, 2018년 30%에 비하여 2019년 3%로 급격히 하락하였음을 나타낸다.

○ 기간별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현황

구분		2017년 7월~12월	2018년 1월~12월	2019년 1월~8월	합계
심의회 미개최	계	7건	32건	86건	125건
	적정	1건	9건	38건	48건
	부적정	6건	23건	48건	77건
부적정 미개최율		85%	72%	56%	62%

- 감사대상기간의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대한 부적정 미개최 비율은 평균 62%이며 이를 기간별로 나누어봤을 때 2017년 85%에서 2018년 72%로, 2019년에는 56%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처리부서별 이의신청 청구 및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 감사대상기간의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건과 관련된 은평구 처리부서는 총 34개 부서로서, 이 중 24개 부서에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처리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 청구인별 이의신청 청구 및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전체 청구 건수의 10%이상을 청구한 청구인은 ○○○○○○와 ◇◇◇◇인데,
- 청구인 ○○○○○○는 기간 중 82건을 청구하여 전체 이의신청 청구의 57%를 차지하며 이에 대한 처리에 있어 심의회를 부적절하게

미개최한 비율은 56%이고, 청구인 ◇◇◇의 이의신청의 처리에 있어서도 부적정한 미개최의 비율이 54%로 기간 중 평균인 62%보다 낮다.

연번	청구인	이의신청 청구	심의회 개최	심의회 미개최	심의회 미개최		부적정 비율
					적정	부적정	
1	○○○○○○○	82건	4건	78건	34건	44건	56%
2	◇ ◇ ◇	15건	2건	13건	6건	7건	54%
⋮							
기간 중 합계		143건	18건	125건	48건	77건	62%

## □ 검토결과

### ○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의 고의성 여부

- 담당자들에 대한 면담과 관련서류를 확인한 결과 이의신청의 전반적인 처리 현황에 있어 고의적으로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 기간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비율이 2019년 3%로 급격히 하락한 반면, 부적절한 미개최의 비율은 매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점차 개선되고 있으므로 부적절한 처리에 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처리부서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도 특정 부서의 고의적인 부적절한 처리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 또한 청구인별 처리현황의 경우에도 청구 건수가 많은 청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의 비율이 전체 기간 평균보다 낮아서 특정 청구인에 대해 고의적으로 이의신청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 은평구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절차 개선 필요

- 은평구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율이 13%로 매우 낮은 것은 이의신청의 처리절차와 관련이 있는데,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청구될 경우 은평구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보공개심의회 담당부서인 민원여권과가 아닌 각 처리부서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작 담당부서인 민원여권과에서는 이러한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여부에 대한 처리부서의 판단에 대하여 담당부서인 민원여권과에서도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 □ 행정상 조치: 기관경고 1, 권고 1

### ○ 기관경고: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로 인한 관련법령 위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정보공개와 관련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 은평구는 감사대상기간 중 청구된 143건의 이의신청 중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77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부서 34개 중 24개 부서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임.
- 따라서, 은평구청장은 정보공개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에 대하여 관련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기하고,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포함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

⇒ 은평구에 “기관경고” 처분

### ○ 권고: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절차 미흡

- 은평구의 경우 이러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율이 매우 낮은 편으로 감사 대상기간인 2017년 7월 ~ 2019년 8월 기간 동안 이의신청 청구 대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율은 13%에 그치고 있으며,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은평구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 담당부서인 민원여권과가 아닌 각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여부(안전상정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는데 처리부서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예외사항과 관련한 법령이나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 판단하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은평구청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처리부서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심 의회의 담당부서인 민원여권과에서도 검증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은평구에 “권고” 처분